

유럽의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있어서 노·사 참여 제도에 관한 연구

박해천 · 이안섭 · 김현우
조선대학교 대학원 산업안전학과

1. 서 론

산업안전에 있어 근로자 참여의 역할은 최근에 뜨거운 논쟁의 초점이다. 일방적으로 사용자만이 산업안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요즘의 안전보건에 있어 의미가 크고 매우 중요하다. 또한 비록 작업장 안전 규정의 시행에서 증가하는 근로자 참여가 산업 재해율을 낮추는데 돋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전통적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는 근로자 참여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분야에 있어서 노·사 참여의 모델이 되는 여러 유럽의 제도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개선점과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유럽을 대표하는 몇 개의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현재 그들 나라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의 노·사 참여 제도를 조사·연구한다.

2.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있어서 노·사 참여 제도

무엇보다도 각각의 산업안전보건추진주체들에게 명확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상호간의 협력을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기관(근로감독청과 직업공제조합, 직업공제조합과 의료보험조합)들 간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사용자, 공공기관과 종업원평의회, 사용자와 종업원평의회, 공공기관-사용자-종업원평의회 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상의 제반 규정이 실행되는 단위는 개별사업장이므로 사업장차원에서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산업안전보건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개별 노동자의 참여와 협력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가 집단화된 형태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내에 갈등과 불만이 조성될 수도 있다. 역으로, 사용자가 법적 규정대로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협조가 없다면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고 효과도 적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독일은 사업장내 노동자대표조직(종업원평의회) 설립을 쉽게 하여 개별 노동자들의 요구와 참여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업원평의

회의 권리와 의무를 산업안전보건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련 제반 규정에는, 실행을 구체화한 의무(예를 들어, 산업의, 산업안전전문위원 배치, 위험물질 표시 등) 이외에, 정해진 원칙 내에서 항상 노·사가 협의 또는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평의회를 구성하여 종업원과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 단체협약을 참작하여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사업장을 대표하는 노조와 사용자단체들이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평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공동결정권을 통해 법적 규정과 재해예방 규정의 틀 내에서 산재 및 직업병 예방, 보건에 관한 규정을 공동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종업원 평의회의 공동결정권(Mitbestimmungsrecht)은 종업원평의회의 동의가 공동결정의무가 있는 사안이나 조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의미이다.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을 종업원평의회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한 후에 종업원 평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서 위법 행위가 적법화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종업원평의회는 노동법 원에 구제신청, 시급한 상황에서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소급 정지할 수도 있다. 또한 공동결정권은 발의권(Initiativrecht)을 포함한다. 종업원평의회의 발의로 공동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결정 사안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구체화할 때이다.

또한 산업안전법 제11조는 안전요원, 산업의, 산업안전전문위원, 종업원평의회, 사용자 등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Arbeitsschutzausschuss)를 구성하여 사업장차원의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3.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있어서 노·사 참여 제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활동주체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업장 내부에는 사용자, 근로자대표기구 혹은 노사대표기구, 근로자, 산업의가 있으며, 사업장 외부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사회보장기관 등이 있다.

직업위험 예방 차원에서 보면, 사용자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위험의 평가를 토대로 하여 안전의 확보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대표기구는 건강, 안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안을 통해 협력하고, 종업원대표위원(délégué du personnel; DP-상시근로자 11인 이상) 및 기업위원회(comité d'entreprise; CE-상시근로자 50인 이상)는 위험예방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특히 노·사참여제도인 보건·안전·근로조건위원회(CHSCT; 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는 직업위험의 예방에 관한 전문기구이다. 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단체 협약에 의해 기업위원회 내지 종업원대표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조합은 산업별 근로자의 보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방법을 제한하는

내용, 근로자에게 위험한 물질의 가공사용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위험한 기계나 도구와 관련된 특별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협의 기구에 참여하여 간접적으로 보건 안전에 개입하고, 노동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감독한다.

기업외부의 직업병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노동부는 노동장소에서의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감독 및 사회보장감독조직은 근로조건, 노동 장소에서의 건강 및 안전 관련 법규의 적용준수를 감시하고 기업에 대해 자문한다. 사회보장(INRS, CRAM), 노동부(ANACT, ARACT) 및 특별조직(OPPBTA, IRSN) 등의 기술적 망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전문능력을 보유,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노동자 대표기구 내지는 노·사 대표기구인 보건·안전·근로위원회(CHSCT)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노동자 참여가 이루어진다. CHSCT는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의 범위, 구성 인원, 임무에 대해서는 주로 노동 법전에 명시되어 있다(노동법전 R.236-1~13조, L136-1~13조). CHSCT의 주 임무로는 사업장 내의 안전 상태에 관한 정보 수집(사용자는 정보 제공 의무), 근로조건에 관한 정확한 파악(활동), 사용자에게 안전 보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의견 제시(자문), 분석 및 작업위험 예방 임무(공동결정), 감시 및 관여, 정보제공(알권리)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CHSCT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CHSCT 설치 대상 사업장 가운데 73%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이 법률에서 정한(3개월에 1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기업위원회의 존재 유무가 CHSCT 설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CHSCT 설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MES-DARES, enquête REPONSE 98).

4.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있어서 노·사 참여 제도

영국은 작업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보건·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안전법(HSWA)을 제정하여 보건안전청(HSE)을 통해 집행한다. 이런 보건안전법은 사용자, 노동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고 있어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보건, 안전 그리고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 역시 합리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안전·보건에 대비할 의무를 가지며, 법에 정한 안전보건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사용자의 노력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은 안전보건 개선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 및 노동자와 사용자가 안전보건 개선의 주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에 대한 참여는 노·사 대표 동수로 구성된 안전위원회를 설립, 안전·보건 정책의 결정부터 참여하도록 보장된다. 작업장에서

는 노동조합에서 안전대표자를 임명하고 안전대표자가 노동자를 대표하여 보건·안전의 실행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도 노·사 동수로 안전보건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의 보장은 안전보건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수립된 정책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까지 노동자가 참여함으로써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데 기틀이 된다.

또한 안전보건법의 실행을 감독·집행하기 위해 보건안전청 산하의 감독국(Field Operation Directorate)을 두어 안전보건의 집행을 하게 된다. 감독관의 역할은 사업장 감독, 사고조사 및 제기된 민원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위하여 방문할 때 반드시 노·사 양측에 통보하고 근로자 대표가 사업장 점검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점검에 노동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감독관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 및 안전보건위원회와 면담을 실시,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다.

5. 결 론

독일, 프랑스, 영국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 법률은 모두 산업안전 보건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노동자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법령안전제도는 동일하지 않고 다른 작업문화와 노·사간 관계의 다른 전통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세 나라 제도 모두다 공동의 안전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위원회(독일은 종업원 평의회)가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은 안전위원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안전 대표가 좀 더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프랑스, 영국제도에 있어서 아주 다르다. 프랑스의 안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요구하지 않지만, 많은 보건, 안전 이슈에 대해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영국은 단지 노동조합이 지정한 안전대표가 법적 보호의 혜택을 누린다. 게다가 심지어 비 노동조합장에서 지명되어진 안전대표들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분야에 있어서의 근로자 참여가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사가 없는 시장 경제하에서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6. 참고문헌

독일:

- [1] Sozialgesetzbuch V, VII
- [2] Arbeitsschutzgesetz
- [3] Arbeitssicherheitsgesetz
- [4]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 [5] Gefahrstoffverordnung
- [6] Biostoffverordnung
- [7] Bildschirmarbeitsverordnung
- [8] Betriebssicherheitsverordnung
- [9] Unfallverhütungsvorschriften Bau
- [10] Betriebsverfassungsgesetz
- [11]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Sozialbericht 2001, Bonn
- [12]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2002, Die gesetzliche [14] Ilversiche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Jahre 2000, Bonn
- [13]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 bundesarbeitsblatt Heft 4-2003, Verlag W. Kohlhammer, Bonn
- [14] Anelie Henter/Kirsten Schlowak, Bericht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1,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Arbeit, Bonn
- [15] Gerhard Bäcker/Reinhard Bispinck/Klaus Hofemann/Gerhard Naegele 2000, Sozialpolitik und soziale Lage in Deutschland, Westdeutscher Verlag, Wiesbaden
- [17] Gnade/Kehrmann/Schneider/Klebe/Ratayczak 2002, Betriebsverfassungsgesetz Basiskommentar 10. Auflage, Deutscher Gewerkschaftsbund, Düsseldorf
- [18] Michael Kittner 2003, Arbeits- und Sozialordnung, Bund-Verlag, Frankfurt am Main
- [19] Mathias Bauer-Alois Engeldinger 2003, Arbeits- und Gesundheitsschutz in klei- n und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Deutscher Wirtschaftsdienst, München
- [20] Hans-Böckler-Stiftung, WSI Mitteilung 3/2003, Bund-Verlag, Frankfurt am Main
- [21] Arbeitsrecht im Betrieb - Zeitschrift für Betriebsratsmitglieder, 1/2000, 2/2000, 9/2000, 10/2000 7/2001, 8/2003 , AiB-Verlag, Köln
- [22] Soziale Sicherheit, Zeitschrift für Arbeit und Soziales, 8-9/00, AiB-Verlag, Köln Arbeit und Arbeitsrecht, Monatsschrift für die betriebliche Praxis, 7/1998, 1/1999, 6/2000, Verlag Wissenschaft, Berlin
- [23] LEX Soft 2003, PC-Personalpraxis, München

프랑스 :

- [24] G. Lyon-Caen, J. Péliſſier, A. Supiot, *Droit du travail*, Dalloz, 1998.
- [25] J.-E. Ray, *Droit du travail droit vivant*, Editions Liaisons, 2003.
- [26] B. Teyssié, *Droit du travail Relations collectives*, Litec, 2002.
- [27] G. Couturier, *Droit du travail 2.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uf, 1991.
- [28] Marie-Françoise Clavel-Fauquenot, Natacha Marignier, *Le CHSCT*, Liaisons Sociales, 2000.
- [29] Nathalie Ferré-Marie-Françoise Clavel-Fauquenot, *Hygiène et sécurité*, Liaisons Sociales, 2001.
- [30] Groupe Revue Fiduciaire, *Dictionnaire RF 2003 Social*, 2003.
- [31] Liaisons Sociales, *Le travail en France Santé et sécurité 2001-2002*, Editions Liaisons, 2002.
- [32] Jean-Paul Antona, Richard Brunois, *Hygiène et sécurité dans l'entreprise prévention et sanctions*, Dalloz, 1991.
- [33] Pierre Joubert, *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CELSE, 1992.
- [34] J. Pluyette, *Hygiène et sécurité conditions de travail lois et textes réglementaires*, Technique et documentation, 2003.

영국 :

- [35] HSE/C, Health and Safety targets : How are we doing?, printed and published b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MISC489 C50 12/02, 2001.
- [36] HSE/C,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nd you, printed and published b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HSE37) (HSE 37) supersedes HSE 25 (HSE25), HSE 20 (HSE20) and HSE 34 (HSE34) supersedes the 2000 edition.
- [37] HSE/C, A guide to the Health and Safety (Consultation with Employees) Regulations 1996. printed and published b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ISBN 0717612341.
- [38] HSE, Working together : Guidance on health and safety for contractors and suppliers. printed and published b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02.
- [39] HSE, A guide to the Offshore Installations (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tees) Regulations 1989 : Guidance on Regulations, printed and published b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ISBN 0717611698.
- [40] HSE, Consulting employees on health and safety : A guide to the law 1999, printed and published b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ISBN 0717616150.
- [41] HSC, 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tees, printed and published b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ISBN 0717612201, 1996.